[별지 제32호서식] <개정 2013.3.24>

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		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①명칭(상호)		
	②대표자의 성명		
	③주소 및 전화번호		( ) -
④대행업무의 범위			

「선원법」 제140조제1항 및 「선원법 시행규칙」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	수수료
첨부서류	1. 다음 각 목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. 인증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.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확보할 것 다.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.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. 라.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확보할 것 2. 인증검사업무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. 인증검사업무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 4. 정관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없음

210㎜×297㎜

(일반용지 60g/㎡<재활용품>)